4.1.3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지침

제정 2016. 04. 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은 보안시스템 개인정보관리 운영규정에 근 거하여 초당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영상정보처리기기"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.
- 2. "영상정보"란 영상정보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3. "처리"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 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4. "정보주체"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·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.

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

- 제4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· 유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 -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4.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5. 교통정보의 수집 ·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샤워실, 화장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설치목적 및 장소
- 2. 촬영범위 및 시간
- 3.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- 4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- 제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 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본 대학교의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.
- 제6조(총괄책임자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둔다.
 -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사무처장이 된다.
 - ③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영상정보의 수집·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.
 - ④ 제3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경비관련 업체에 위탁할 경우 경비관리업체의 지휘·감독 업무를 포함한다.
- 제7조(영상정보의 보호원칙) ① 영상정보 수집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하여 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다.

제3장 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

- 제8조(수집의 제한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제한 등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 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 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
 -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

보를 제공하는 경우

-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와 제7호까지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접근권한 부여자) ①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총괄책임자, 담당부서의 담당자, 위탁 경비업체의 담당자로 하다.
- 제11조(보호조치 등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 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 한한다.
 -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.
 - ⑤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따라 접근하여야 하며,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사항(목적, 범위, 열람자, 열람일시 등)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⑥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중 "경비업체 담당자"가 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이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.
- 제12조(열람 등의 요청) ① 정보주체는 본 대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영상정보의 존 재확인 및 열람을 별표 1의 의거하여 신청·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본 대학교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-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- 4.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제13조(보유 및 삭제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는 30일 동안 보유하며, 이 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 단,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을 연장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이용·제3자 제공·파기의 기록 및 관리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

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- 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
- 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- 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- 2.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 - 3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- 제1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)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지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비밀유지 의무)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(종합상황실)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영상정보 관리대장) 제14조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개인영상정보(□ 열람 □ 존재확인) 청구서							처리	처리기한	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10일	이내
청 구 인	성 명			전 호	하 번 호				
	생년월일			정보주차	체와의 관	계			
	주 소		,			,			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 명			전 호	가 번 호				
	생년월일								
	주 소								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 청하지 않으 면 처리가 곤 란할 수 있 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<i>201</i>	15.01.01	18:30	~ 2015	5.01.01 1	1 <i>9:00</i>)		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<i>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</i>)							
	청구 목적 및 사유								
「교육부 개인 합니다.	<u>l</u> 정보 보호지침」	제72조에 대	다라 위의	라 같이	개인영	상정보의	열람,	존재확인	!을 청구
		년	월		일				
						청구인		(서명	또는 인)
			000	○ 귀하	-				
담당자의 청	구인에 대한 확인	인 서명							

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

번호	구분	일시	파일명/ 형태	담당자	목적/ 사유	이용. 제공받는 제3자 /열람등 요구자	이용. 제공 근거	이용.제 공 형태	기간
1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								
2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								
3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								
4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								
5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								
6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								
7	□ 이용 □ 제공 □ 열람 □ 파기								